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1. . .

의 결
사 항

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발의연월일	2021. 11. 8.
발 의 자	장미경 의원 외 12명

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8.

발의자 : 장미경·강승수·권재욱·김낙관
김영길·김재상·김춘남·김태근
안주찬·양진오·윤종호·장세구·
최경동(13명)

1. 제안이유

가.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낙동강 전체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대구시 자체 공급방안 구축 등으로 해결해야함에도 대구시는 이와 동떨어져 구미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.

나. 지난 제1차 <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> 활동 과정에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도외시킨 집행부의 대응 등으로 인하여 시민이 만족할만한 결과 도출이 어려웠음.

다. 이에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이끌어내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<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>를 재차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성인원 : 9명(위원장 1, 부위원장 1, 위원 7)

나. 활동기간 : 제8대 구미시의회 의원 임기 종료까지

다. 활동사항

-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에 관한 사항
- 낙동강 수질개선 및 구미·대구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
- 취수원 이전관련 사례 수집·분석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
대안 제시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,

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7조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

-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

-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-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